

대구대학교 - 코오롱인더스트리(주) FnC부문



상호교류협약서

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

대구대학교 (이하 “갑”이라 함)는 코오롱인더스트리(주)에프엔씨부문(이하 “을”이라 함)과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“을”이 보유한 의류 재고 상품(이하, “기부 상품”)을 “갑”의 대구대학교 소속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실습 목적으로 기부하는데 있어 상호 간 협력 관계를 긴밀히 함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 (협력내용)

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가.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“갑”의 대구대학교 소속 학생들의 교육 실습 용도로 의류 재고 상품을 기부한다. 수량 등 기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. 기부 상품 상세 내역과 같다.
- 나. “갑”은 “을”로부터 받은 기부 상품이 본 협약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·감독하기로 한다.
- 다. “갑”은 기부 상품을 지원받는 학생들로부터 기부 상품이 실습 등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제3자에 유통을 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하기로 한다.
- 라. “갑”은 기부 상품을 사용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또는 전시 카탈로그 진행 시 “을”로부터 교육용 목적으로 의류를 지원받았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한다.
- 마. “갑”은 “을”的 기부 상품 제공에 대해 기부 영수증을 발행한다.
- 바. 위 가호 내지 마호 외 협약 사항은 상호 합의로 정한다.

제3조(분쟁해결)

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 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제4조(의무사항)

- “갑”과 “을”은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
-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협약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

“갑”과 “을”은 업무 협약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호간의 공동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.

제6조(협약의 해지)

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“갑”과 “을” 상호 간에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
제7조(기타사항)

본 협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별도 협의하에 처리한다.

2022년 7월 27일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총장 박순진

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

대표이사 유석진

